

	<h2 style="margin: 0;">타 대학 학점교류 운영지침</h2>		규정번호	3-3-37
			제정일자	2020.09.01
	개정일자	-		
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	1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대학 간 협력교육 교과목의 신청 및 학점 인정 등 학점교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 간 협력교육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의 협력교육 교과목에 적용한다.

제3조(수강신청) ① 1학년 1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다.
 ② 학기 당 1개 교과목만 신청할 수 있다.
 ③ 수강신청 절차는 별도 공지사항에 따라 진행하며, 본 대학 수강신청 정정기간까지 취소는 가능하나 변경신청은 불가하다.

제4조(운영) 매 학기 협약대학 간 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를 정하여 시행한다.

1. 개설 교과목의 종류 : 교과목 수, 학점 등
2. 수업 운영방식
3. 대학별 배정 인원

제5조(성적) 타 대학 학점교류 교과목의 성적은 P/NP로 평가한다.

제6조(보칙)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학칙 및 대학 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본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